

# 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55,853,345	7,675,600
일반회계	240,715,309	7,221,459
특별회계	15,138,036	454,141
기타특별회계	15,138,036	454,141
수질개선 특별회계	7,110,037	213,301
주택사업 특별회계	2,960,699	88,821
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	708,016	21,240
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	1,199,339	35,980
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	1,182,377	35,471
주차장관리 특별회계	1,362,225	40,867
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	565,679	16,970
기반시설 특별회계	29,614	888
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	20,050	602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595,785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채무상환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